#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및 31122(2020.11.29.) 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8종의 집합금지 또는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Ⅱ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8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8종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Ţ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Ţ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u>안내</u>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및 31122(2020.11.29.) 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sup>*</sup>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재/기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식당	<ul>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li> <li>-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li>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li> <li>*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li> <li>■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li> </ul>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 공포(9.29) 3개월 후인 12월 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Ţ

② (지자체) 관내 **시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좌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 다만,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 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u>손해배상(구상권) 청구</u>

## 참고1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 <b>식당·카페</b>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동기간 부여(~12.6), 계동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이오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시업법에 따른 가맹점 시업재/기맹시업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 <u>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u>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u>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u>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m²이상)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식당	단당당대당 기페되 당확인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 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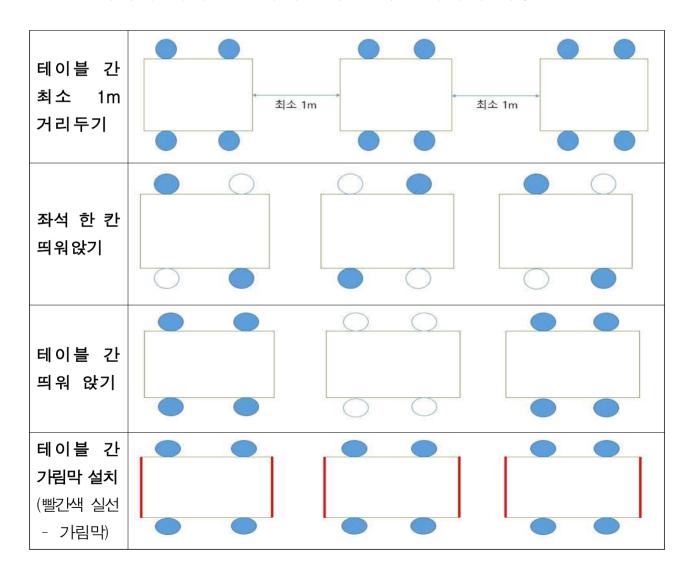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 보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 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참고2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 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이 의무화됨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및 31122(2020.11.29.) 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 2조 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1]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Ų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Omega$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Fig. 2 \*\* Fig. 3 \*\* Fig. 4 \*\* Fig.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u>추가 행정조치</u>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1

# 체육시설의 종류

##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운동 종목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세부사항	근거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시행령, 유권해석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시행령
무도장·무도학원		시행령
당구장		시행령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시행령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시행령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시행령
수영장		시행령
볼링장		시행령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행령
탁구장		시행령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시행령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시행령
종합체육시설		시행령
빙상장		시행령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시행령, 유권해석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 등	유권해석
체육교습업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체육시설법

#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및 31122(2020.11.29.) 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등에 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②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 다만, 아래와 같은 교습 과정은 집합금지에서 제외하며, 방역지 침 의무화
- ①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노래·관악기 교습을 금지하는 방역지침 의무화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호, 제2의2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 집합금지 대상 학원·교습소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Д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Ţ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6 추진내용 및 절차 :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교습 과정, 평생교육기관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Л

② (지자체) 관내 **시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Ú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김염병예방법 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기능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 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 | 학원 등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 ①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마스크 착용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허가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 관리자 운영자 수칙

- ▶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및 31122(2020.11.29.) 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12종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2종

#### < 일반관리시설 12종 >

-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오락실 모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 ▲ 상점·마트·백회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² 이상)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2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Ĺ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hat{1}$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김염병예방법 제33초)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기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 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마스크 착용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li>출입자 명부 관리</li> <li>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li>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li> <li>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li> </ul>	<ul>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마스크 착용</li> <li>▶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li> </ul>		

#### □ 영화관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공연장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 마스크 착용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선취하지 않도록 안내

#### □ PC방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마스크 착용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오락실·멀티방

#### 관리자 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마스크 착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m²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직업훈련기관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마스크 착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허가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 후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

#### 관리자 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무알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m²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li><li>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ul>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시식 코너 운영 금지	

# 수도권 집합 -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 에 따른 집합·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 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 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 ※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① (중대본)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Д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Û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김염병예방법 제83조)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仆

-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인 미만의 집합·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 집합·모임·행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li>출입자 명부 관리</li> <li>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li> <li>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li> <li>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li> <li>일 2회 이상 시설 환기</li> <li>*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li> <li>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 관리자 운영자 종시자 참석자 등 모임·행시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③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 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Д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hat{\mathbb{U}}$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 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참고

##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 성규에메·미사·합외·시골적 등 비대면 실시	■ 성유에메·미사·합외·시설적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접수를 담당하는 한덕을 만드시 포함하여 전세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sup>*</sup>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sup>*</sup>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 에 따른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Omega$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Û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김염병예방법 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u>방역</u> 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u>추가 행정조치</u>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기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 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마스크 착용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 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 적으로 적용 가능

#### ④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5 추진내용 및 절차

- ① (중대본) 운송 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Л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김염병예방법 제83조)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u>방역</u> 지침을 모두 준수

#### 이용자 수칙

-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운송수단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 에 따른 수도권 숙박시설 등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2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 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파티룸' 등도 대상에 포함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③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숙박시설 등에 의무화 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Д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김염병예방법 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u>방역</u> 지침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삼여 금시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sup>※ &#</sup>x27;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기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u>현장점검</u>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 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